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의안 번호	3041
----------	------

2022년 2월 7일  
운 영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1.21. 김정태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2.1.25.

다. 상정 일자 :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
- 2022년 2월 7일 상정·의결(수정 가결)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민과 밀접한 여러 현안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를 정례화하고,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용역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며,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‘관리’의 뜻을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로

정의함(안 제2조제2호).

- 연구용역 내실화와 시민의 참여 보장을 위해 연구용역 과제의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2항 신설).
- 연구기관 공모 방식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함(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).
-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등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).
- ‘관리’에 대한 재정의에 따라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(안 제10조제1항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해 그 과제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, 긴급한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며, 그 외 연구용역의 체계적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,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과제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음.

### 2 연구용역의 ‘관리’ 관련 조항 정비(안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)

- 「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」(이하 조례) 제2조(정의)는 ‘입법정책 연구용역’ 및 ‘관리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, 개정조례안은 ‘관리’에 대해 현행 조문의 “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”를 개정해 “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”로 정의하였음.

<표-1> 제2조의 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_____ _____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관리”란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.	2. _____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_____ _____.

- ‘관리’ 개념의 정의에 “품질향상을 위한”이라는 목적을 밝히고, 그 범위를 과제 선정 이후부터로 한정된 것은, 연구용역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목적을 명시하고 그 목적에 맞게 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부합하는 개정으로 판단됨.
- 또한 조례안 제10조에서 관리 업무를 입법담당관 외에 상임위원회도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, 상임위원회가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연구용역 과제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.

<표-2> 제10조제1항의 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연구용역의 관리)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<u>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</u>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. <u>다만, 상임위원회 소관</u> 과제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.	제10조(연구용역의 관리) ① _____ 다음 _____ 따라 입법담당관 및 상임위원회에서 _____. <단서 삭제>

- 다만 「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」 제7조에 따르면 “입법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”은 입법담당관 사무로 규정되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음.<sup>1)</sup>

### 3 연구용역 과제의 아이디어 공모에 시민 참여 보장(안 제6조제2항 신설)

- 안 제6조제2항은 연구용역 내실화와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해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1) 현재 추진 중인 「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」에는 전문위원 사무 가운데 하나로 연구용역을 포함하고 있음.

<표-3> 제6조의 신규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(생략)  <신설>	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 ② 의장은 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모의 절차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- 현행 규정에서는 과제 제안 주체가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고(조례 제6조), 이들 주체가 관료적 편향성 등의 이유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를 제안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으므로,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는 보완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임.
- 다만 아이디어 공모로 인해 기존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있어도 배정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, 각 부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과제와 중복되었을 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 명확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개정안의 취지와 관련해 “연구용역을 내실화”한다는 것은 이 조문에 적합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으로 보임. 내실화의 사전적 정의가 “내적인 가치나 충실성을 다진다”는 의미이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에 의해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라면, 내실화보다는 “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”한다는 표현이 이 조항의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.

#### 4 연구기관 공모방식에 대한 예외 규정(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)

- 안 제8조제1항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, 의장이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에 대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음.

<표-4> 제8조제1항의 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<u>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.</u>	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- 그러나 이 개정 조항은 거의 같은 뜻의 ‘긴급’과 ‘시급’이 병렬되어 있는데<sup>2)</sup> 두 단어 모두 매우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조례 규정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를 따르거나 이와 유사한 구체적인 예외 성립 조건을 나열해서 밝혀줄 필요가 있음.

#### 5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규정(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)

-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은 현행 조항의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방식을 개정해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의 구

2)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긴급은 “긴요하고 급함”, 시급은 “시각을 다룰 만큼 몹시 절박하고 급함”으로 정의되어 있으며, 다음 국어사전에서도 긴급은 “매우 급함”, 시급은 “시각을 다루어야 할 만큼 몹시 급함”으로 정의되어 있음.

체적인 사항은 상위 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음.

<표-5> 제9조 신규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<u>평가위원회 위원은 과제 관련 공무원,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,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</u></p>	<p>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에 따른다.</u></p> <p>③ <u>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.</u></p>

-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관련 상위 법령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은, 서울특별시가 관장하는 각종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담은 「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잦은 개정을 고려해 조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한편 개정안 제9조제3항에서 “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”는 조문은 그 의미가 모호한데,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평가위원회 ‘위원’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인지 평가위원회 ‘회의’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한 만큼, “평가위원회 회의”라고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.

## 6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 중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관련해 아이디어 공모 형식으로 시민 참여를 보장한 규정은 연구용역 과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확산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됨.
- 또한 연구용역 ‘관리’에 대해 그 목적 및 업무 범위와 주체를 명확히 정의한 것은 연구용역 과제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.
- 다만 일부 조항(안 제6조제2항, 제8조제1항, 제9조제3항)은 조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

<표-6> 현행 조례 및 개정안,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	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의장은 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모의 절차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모의 절차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p>
<p>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	<p>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입법담당관이 수행한다.</p>	<p>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과제 관련 공무원,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,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</p>	<p>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에 따른다.</p> <p>③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조례안과 같음)</p> <p>③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.</p>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토론요지 : 생략

## 7. 수정안의 요지

### 가. 수정이유

-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의 취지를 연구용역 주체의 다양화로 명확히 밝히고 그 외 일부 조문의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.

## 나. 수정 주요골자

-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의 취지를 연구용역 주제의 다양화로 함(안 제6조).
- 연구기관 선정 공모방식의 예외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8조).
- 입법담당관가 상임위원회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회의 문구를 첨가함(안 제9조).

## 8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(별첨 참조)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)

## 9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.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#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041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2월 7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의 취지를 연구용역 주체의 다양화로 명확히 밝히고 그 외 일부 조문의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의 취지를 연구용역 주체의 다양화로 함(안 제6조).
- 연구기관 선정 공모방식의 예외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8조).
- 입법담당관가 상임위원회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회의 문구를 첨가함(안 제9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예산조치 : 원안과 같음.
-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”를 “연구용역의 주제를  
다양화하고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 
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”로 한  
다.

안 제9조제3항 중 “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야”를 “평가위원회 회의에  
참석하여야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관리”란 <u>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</u>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----- -----.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의장은 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 <u>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	<p><u>이 경우 공모의 절차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연구용역 과제 선정)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(이하 “사무처장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<u>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</u>이 선정한다.</p>	<p>제7조(연구용역 과제 선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</u>(이하 “운영위원장”이라 한다) -----.</p>	<p>제7조(연구용역 과제 선정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1. ~ 3.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<u>의회사무처</u> 입법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.</p>	<p>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. 다만,</p>	<p>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

의장은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-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-----

<신 설>

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입법담당관이 수행한다.

② (개정안과 같음)

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생략)

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과제 관련 공무원,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, 공무원인 위원

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및

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제10조(연구용역의 관리)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. 다만, 상임위원회 소관 과제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과제별 소관 상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」에 따른다.

③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연구용역의 관리) ① -----  
----- 다음 -----  
-----  
----- 따라 입법담당관 및 상임위원회에서 -----.

<단서 삭제>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--.

제10조(연구용역의 관리) ① (개정안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”을 “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모의 절차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(이하 “운영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

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입법담당관이 수행한다.

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에 따른다.

③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, “따라”를 “따라 입법담당관 및 상임위원회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”을 “입법담당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관리”란 <u>연구용역 과제 공모</u> <u>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</u> 모든 업무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</u> ----- --.</p>
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모의 절차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<p>제7조(연구용역 과제 선정)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(이하 “사무처장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<u>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</u> 선정한다.</p>	<p>제7조(연구용역 과제 선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(이하 “운영위원장”이라 한다)</u>-----.</p>

1. ~ 3. (생략)

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.

<신설>

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생략)

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과제 관련 공무원,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,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제10조(연구용역의 관리)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입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입법담당관이 수행한다.

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에 따른다.

③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연구용역의 관리) ① ----- 다음 -----

법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. 다만, 상임위원회 소관 과제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」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정책위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----  
-- 따라 입법담당관 및 상임위원회에서 -----. <단서 삭제>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 입법담당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